

Issue Paper 10-12-3

정준우 · 성승제

Issue Paper 10-12-3

정준우 · 성승제

2010. 9. 6.



I. 서 설 .....	5
II. 은행세의 도입논의와 그 배경 .....	7
1. 미국의 금융위기 .....	7
2. 미국 금융위기의 국제적 확산 .....	12
3.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세의 도입논의 .....	15
III.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국제적 동향 .....	21
1. 국제통화기금(IMF) .....	21
2. G20 회의 .....	24
3. 각국의 동향 .....	27
IV. 은행세의 도입논의와 주요 쟁점사항 .....	35
1. 은행세의 의의 .....	35
2. 은행세의 도입목적 .....	39
3. 은행세의 도입방식 .....	45
4. 은행세의 부과기준 .....	50
V. 우리나라에서의 은행세 도입논의 .....	53
1.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정부의 입장 .....	53
2. 은행세의 도입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	55

<b>VI. 독일 은행세 관련법안(2010.8.25 발의) 소개 .....</b>	<b>63</b>
<b>1. 문제 및 목표 .....</b>	<b>64</b>
<b>2. 법안 내용 .....</b>	<b>66</b>

- 미국에서 주택가격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sup>1)</sup>는 2009년에 그 정점에 다다르며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뜨렸음
- 이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그 동안 미국식 자본주의의 첨병 역할을 해 온 5대 대형 투자은행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며<sup>2)</sup> 그 여파가 실물경제에까지 미쳤고, 종국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투자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에 지원하였고, 각국의 정부도 국제적인 공조를 하며 자국 내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시행하였음
- 그런데 금융위기를 초래한 후 막대한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이 다시 고수의 고위험의 영업행태를 답습하자,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와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위기를 대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은행세의 도입계획을 발표하였음

1)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준,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법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제거래법학회 발표문, 2008 참조.

2) 대표적인 사례로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한 골드만삭스와 2008년 후반에 파산한 리먼 브러더스를 들 수 있음.

I.

- 이처럼 2010년 1월 14일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한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발표를 기점으로 하여 은행세는 IMF 등의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특히 G20 회의의 주요의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찬반의 논란이 분분함
  
-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폭적인 개편을 가져온 통합된 자본시장법을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제기된 은행세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은행세의 도입논의에 관한 배경과 국제적인 동향 그리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1. 미국의 금융위기

-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미 2005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sup>3)</sup> 사태로 대변되는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미국의 정책 당국은 금융위기의 정확한 실체와 그 원인 그리고 위기의 파급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였음
- 미국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고무된 지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회사들이 2005년 초부터 경쟁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sup>3)</sup>와 같은 고위험·고수익의 주택담보대출을 해 왔음. 그리하여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가계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부실도 크게 확산될 위험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음
-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컸던 것은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회사들이 취급하고 있었던 ARM(Adjustable Rate

---

3)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란 금융기관이 신용평점이 낮은 사람들에게 모기지 론(Mortgage Loan)을 하는 대출프로그램으로서 그 특징은 주택담보대출 비율(Loan to Value Ratio: LTV)이 높고 변동금리부대출(Adjustable Interest Rate Mortgage: ARM)이 많다는 점임.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에는 만기 이전의 조기상환이 사실상 제한됨으로써 금융기관들은 일정한 현금흐름과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 그러던 중 2000년대 들어와 더욱 풍부해진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경쟁적인 담보대출의 증가가 폭발적인 가계의 대출수요와 결합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도 크게 증가하였음.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서 차주의 신용평점은 일반적으로 300점에서 900점의 범위 내에서 매겨지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평점으로는 Fair Issac Corporation 이 제공하는 FICO Score가 있었음.

## II.

Mortgage)인데, 이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또는 원리금상환부담액이 차주의 소득보다 큰 가계에 대해서 초기의 3년 또는 5년간은 원리금의 납부를 유예하여 주되, 그 이후부터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원리금을 모두 추가하여 회수하는 대출상품으로서 이미 상당부분의 부실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집적되고 있었기 때문임<sup>4)</sup>

- 그리고 만약 ARM이 부실화 되면 그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주택경매처분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주택가격의 급속한 하락을 촉발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임. 그리하여 그동안 OCC를 비롯한 미국의 감독당국은 2005년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가계와 금융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하였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 하였음

- 그러던 중 2006년 말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이 13%대로 크게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크게 확산되었지만, 역시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권 및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았음

- 그렇지만 2007년 6월에 Bear Sterns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헷지펀드에서 환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동년 8월에는 영국의 HSBC 은행과 독일의 COMMERZ 은행 및 일본의 신세이 은행이 그리고 동년 11월에는 미국의 시티 은행과 Merrill Lynch 및 유럽의 UBS와 DEUTSCHE 은행 등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련된 거액의 손실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신용불안은

4) 안종식, “미국 감독당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및 효과”, 금융감독원 자료, 3면.

다시 크게 확산되었음

- 그리하여 2007년 9월부터는 미국의 FRB가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의 공급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잠시 주가가 반등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그 직후인 2008년 3월에 미국 내 2위의 민간주택담보대출회사인 New Century Financial이 사실상 파산하면서 다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불안이 크게 확산되었음
- 또한 미국의 공영 주택담보대출회사(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GSE)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손실확대에 따른 유동성위기와 두 회사를 국유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의 손실확대<sup>5)</sup>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은 극도로 악화되었음. 이에 더하여 미국정부가 파산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대형 투자은행인 Lehman Brothers가 2008년 9월에 파산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졌음<sup>6)</sup>

□ 한편 미국 금융위기의 핵심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먼저 증권화과정<sup>7)</sup>에 개입하여 보증을 제공한 공영주택담보대출회사들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유동화가 신용파생상품(CDS)<sup>8)</sup>과 결합하면서 대형 투자은행과 상업은행들의 부

5) 그동안 미국의 지역은행들은 대부분 안전장치의 하나로 공영주택담보대출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국유화 되면서 지역은행(저축은행을 포함함)들의 손실은 약 3,000억 달러에 달하였음.

6) Wall Street Journal, 2008. 10. 7.

7) 구체적인 예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공영주택담보대출회사인 Freddie Mac은 이미 1970년대부터 주택모기지채권의 증권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주택모기지채권의 증권화의 경향은 1980년대에 와서 사적금융기관에까지 크게 확대되었음. 그리하여 1993년에는 전체 주택모기지론의 약 60%가 증권화 되었음(Kathleen C. Engel & Patricia A. McCoy, "A Tale of Three Markets: The Law and Economics of Predatory Lending," 80 Texas Law Review 1255(2002), p.8).

8) 원래 신용파생상품(CDS)은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가 제3자에게 신용위험을 전가시킴으로써 위험을

## II.

실을 아울러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적으로는 실물경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일반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서 금융기관은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을 발행한 후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함.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만기까지 자금이 묶이는 일반대출과 달리 대출한 금융기관이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유동화 하는 과정에서 보수적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평가 대신에 채권보증회사·보험회사·투자은행으로부터 신용파생상품(CDS)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였는데, 당시에 뉴욕의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CDS 발행회사는 불과 10여개 내외였으므로 CDS 거래의 증가는 결국 CDS의 발행회사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그런데 그 후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점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해져 갔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과정에서 보증을 제공한 Fannie Mae와 Freddie Mac 같은 정부보증기구가 부실해 졌으며, 이러한 부실은 결국 투자은행과 상업은행들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음.<sup>9)</sup> 그러다가 2008년 후반에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을 정점으로 하여 금융위기는 결국 실물경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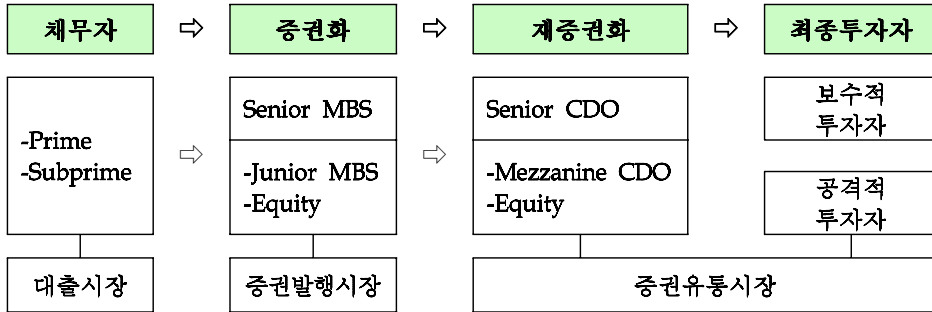
---

분산시키는 상품이었음.

9) 구체적으로 파산에 직면하였던 시티그룹을 비롯한 메릴린치, 컨트리와이드, AIG 그룹 등이 미국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았음.



○ 참고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유동화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이처럼 그동안 세계의 금융시장을 지배하던 미국에서 총금융자산의 2.4%에 불과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대규모의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기가 발생한 것은 주택가격의 갑작스런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었음<sup>10)</sup>

- 첫 번째는 단기성과주의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월가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내재적 위험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을 해소하거나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임
- 두 번째는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산업의 규모로 인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에 연계된 거래보다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거래를 위한 거래를 함으로써 결국 누적된 위험은 경제주체의 관리범위를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임

10)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중식, 전계자료, 10-12면 참조.

## II.

- 세 번째는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그 스스로 위험을 창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조업과 달리 시장의 위험을 적절히 규제하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축대부조합(S&L) 사태<sup>11)</sup>가 마무리되던 1990년대부터 미국이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서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율규제를 지나치게 추진하였기 때문임
- 네 번째는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산업의 특성 때문임. 즉 금융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집적하게 되고, 이러한 집적된 위험이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결국 그 위기가 현재화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집적된 위험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그로 인해 결국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임

## 2. 미국 금융위기의 국제적 확산

- 갑작스런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 여파가 실물경제에까지 파급되면서 결국 미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음
-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약 6,650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 내 전체 모기지의 약 29%에 달하였음. 그런데 주택

---

11) 저축대부조합(Saving and Loans Association: S&L) 사태는 미국에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있었는데, 주로 조합원들의 예금을 기초로 서민들에게 주택저당대출을 하던 저축은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축대부조합이 1969년부터 예금을 수신하게 되면서 위험이 증가되었음. 왜냐하면 단기예금을 받아서 고정금리의 장기저당권부대출을 주된 영업으로 하던 저축대부조합이 1979년 말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단기예금의 이자율로 인해 심각한 역마진(reverse margin)의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임.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약 220만명이 주택을 압류당하는 상황에 이르렀고,<sup>12)</sup> 이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였음

-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심각한 금융위기로 인해 2007년 4월에 미국 내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결국 파산신청을 하였고, 2007년 8월에는 10위권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사<sup>13)</sup>가 델라웨어주 웰밍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였으며, 보험사인 CAN 파이낸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투자로 약 9,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음
-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 내 대부분의 모기지 관련 대출 회사들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에 걸쳐 주로 신용평가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려왔으므로 이번의 부동산 서브프라임 위기는 자동차 서브프라임 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음

□ 전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큰 경제시장이며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곧바로 미국의 금융시장과 연계된 각국의 금융기관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였음

12) 최승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소송의 현황과 전망”, 「증권법연구」제10권 2호(한국증권법학회, 2009), 414면.

13)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사는 알트-A 등급(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중간 등급) 모기지가 전문인 모기지 대출 회사임.

## II.

- 즉 2007년 6월부터 Bear Sterns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헷지펀드에서 환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동년 8월에는 영국의 HSBC 은행과 독일의 COMMERZ 은행 및 일본의 신세이 은행 등이 거액의 투자손실을 발표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었으며, 동년 11월에는 미국의 CITI 은행과 Merrill Lynch 및 DEUTSCHE 은행 등과 같은 유럽은행들이 거액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을 발표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불안은 더욱 급속히 확산되었음
- 구체적으로 세계 3위의 은행인 영국의 HSBC가 미국의 주택 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약 107억 달러(약 10조 1,000억원)를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였음. 그리고 2007년 8월 9일에 프랑스의 최대은행인 BNP 파리바은행이 자사의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 펀드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 및 환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sup>14)</sup> 이 역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한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그 주된 이유였음
- 그리하여 2008년 10월 2일에 7,000억 달러의 금융구제법안이 미국의 의회를 통과하면서 감독당국이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긴급유동성을 국내·외에 공급하였지만, 미국 금융회사의 부실은 여전히 영국의 HBOs와 독일의 Hypo Real Estate 등 유럽 금융회사의 부실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이 더욱 심화되어 갔고, 중국적으로는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급속히 확산되었음
- 한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산은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 등 일부의 경제관련단체들도 전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

---

14) BNP 파리바은행이 상환을 중단한 3개의 펀드는 BNP파리바 ABS유리보, 파베스트 다이내믹ABS, BNP파리바ABS에오니아 등인데, 그 규모가 약 27억 5천만 유로에 달하였음.

하는 미국에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 내 가계의 소비위축에 따른 실물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한국 내 금융시장의 충격과 대미수출의 지장을 우려하고 있었음

### 3.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세의 도입논의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이 2008년 2월의 Bear Sterns의 유동성위기와 동년 9월의 Lehman Brothers의 파산 후 더욱 심화되면서 글로벌 신용위기로 확대되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이처럼 미국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자, 먼저 미국 의회는 금융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2008년 10월 3일에 경제위기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을 통과시켰고,<sup>15)</sup> 이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는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라는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정책을 발표하였음
- 그리고 미국 정부는 경제위기안정화법의 실행을 위해 금융안정화사무국(Office of Financial Stability: OFS)을 설립한 후 그에 TARP의 관리운용을 맡겼는데, TARP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산을 비롯한 각종 부실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경색완화와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였음

15) GAO,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 Dec. 2008, GAO-09-161, p.1(<http://www.gao.gov/new.items/d10151.pdf>).

## II.

- 그리하여 TARP는 최고 7,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의 인수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하였는데, 여기서의 부실자산이란 2008년 3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 채권 중 경제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자산과 재무부 장관이 FRB 의장과 상의하여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 기타의 금융수단을 의미함
  
- 이에 더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초래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방지와 조속한 안정을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에도 경제안정화를 위한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그 주된 대상은 역시 국가재정에 비해 복지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유럽의 중앙은행들이었음
  - 구체적으로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FRB는 미국 내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의 공급만으로는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유럽의 중앙은행을 포함한 14개국의 중앙은행에 약 8,500억 달러(2008년말 기준)에 달하는 스왑 형태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음
  - 즉 처음에는 주요 4개국의 중앙은행에만 2,900억 달러를 공급하였지만, 점차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상국가와 국가별 한도를 확대하여 2008년 말에는 유럽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영국, 스위스, 일본 등 4개 중앙은행과 무제한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 중앙은행과도 100억 내지 300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스왑라인을 개설하였음
  - 이처럼 미국의 FRB가 외국의 중앙은행과 스왑라인을 개설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미국 내 외국인투자자 자금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동시에 국제자금의 미국 내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신용 경색으로 인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일시에 대량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신규채권 발행의 어려움을 예방하며, 금융위기의 국제적 확산에 의한 각국 중앙은행의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동시에 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확보하고, 금융위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음

- 한편 미국의 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유동성의 공급정책 외에 저금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
  - 즉 미국의 FRB는 2007년 6월의 주가대폭락사태 이래로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결국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0% 수준으로까지 과감히 인하하였는데, 이는 시장의 실질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정책당국의 금리인하효과가 가계 및 기업에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음<sup>16)</sup>
  -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공영주택담보대출회사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보증 하에 신규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MBS)을 FRB가 직접 매입함으로써 2008년 11월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5.47%에서 4.5%로 인하시켰으며, FRB가 기업어음을 시장에서 유통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직접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CP 금리를 0.5%P 하락시켰음
  - 이러한 FRB의 극단적인 기준금리 인하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하시킴으로써 한계가계의 추가부실을 최대한 차

16) 안중식, 전계자료, 16면.

## II.

단하여 주택경매처분을 억제하였고, 기업어음의 금리 인하를 유도해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실을 방지하였지만 의외로 감독당국이 원래 기대한 효과에는 크게 못 미쳤음

-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자, 드디어 미국 정부는 먼저 미국 내의 금융위기를 조속하고 실효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인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을 결정하게 되었음
  - 먼저 미국 재무부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7,000억 달러의 경제안정화자금 중에서 2,500억 달러를 9개 대형은행<sup>17)</sup>의 자본확충을 위해 직접 투입하였음. 물론 이 과정에서 대형은행들은 공적자본의 투입 후 있게 될 정부의 경영간섭과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을 피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지원신청을 꺼렸지만, 미국 재무부와 FRB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은행들에게 공적자금의 지원신청을 강력히 권고하였음
  - 그리고 미국 정부는 「주택가격의 하락→한계가계의 주택 포기→주택압류의 증가→주택가격의 하락」의 악순환이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한 후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는데,<sup>18)</sup> 구체적으로 공영주택담보대출회사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에 5,000억 달러를 직접 투입하면서 동시에 4,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여 이들이 발행하는 MBS를 매입하였음

17)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9개의 대형은행은 CITI Group,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Wells Fargo, Bank of America Corp.,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Bank of New York Mellon Corp., State Street Corp. 등이었음.

18) 안중식, 전개자료, 18면.



- 또한 2008년 9월 16일 미국의 FRB는 최악의 경우 약 23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AIG의 무질서한 몰락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는 미국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금조달의 비용을 크게 높여 결국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AIG에 대해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미국 재무부와 FRB는 대형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데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와 에이비스(Avis)에 대해서는 다시 구제금융을 지원하였음<sup>19)</sup>

□ 그런데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흡하였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정부가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음

-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2008년에만 약 2조 2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투입하였음.

19) 이러한 공적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재무부는 TARP를 통해 개별 회사에 까지 지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에이비스에 대한 구제금융 이었음. 왜냐하면 에이비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재무부가 에이비스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면 에이비스가 더 많은 렌터카를 구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억지논리였기 때문임. 한편 재무부와 FRB가 리먼브러더스는 몰락하게 그대로 방치하면서 같은 시기에 AIG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도 그 지원기준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하였음.

## II.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은 여전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향후 약 1조 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더욱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대형은행들이 부실한 지역은행을 인수하도록 한 감독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원금의 대부분을 현금성 자산인 국채의 매입에 운용하거나 또는 사실상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체인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제기되었음
-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병행하여 부실한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음
- 또한 공적자금의 미흡한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 금융기관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등에 근거한 공적자금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고, 매우 저조한 공적자금 회수율로 인해 효과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2010년 1월 14일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과 개별적인 금융회사들에게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음
- 그 이후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IMF는 은행세에 관한 보고서까지 제출하였으며, G20 회의에서도 은행세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고, 각국의 정부도 은행세의 도입여부에 관한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였음

## 1. 국제통화기금(IMF)

- IMF는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새롭게 세계질서를 구축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구상으로 1945년에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현재의 회원국 수는 186개국임
  - IMF의 보다 세부적인 설립목적은 국제통화간 협력의 촉진,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적인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및 경쟁적 평가절하의 방지, 경상거래에 관한 다자간 결제제도의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 지원 등임
  - IMF는 각 회원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Board of Governors)와 24명의 상무이사로 구성된 이사회(Executive Board)<sup>20)</sup>를 통하여 주요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고, 1년에 2회의 회의를 통해 국제통화제도 및 IMF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안전에 대하여 총회에 조언하는 자문기구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and Monetary Committee: IFMC)를 두고 있음
  - IMF는 회원국이 건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활동과 융자 및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0)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운영에 관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쿼타 비중을 가진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 지명한 5명과 기타 회원국이 그룹을 만들어 선출한 19명 등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III.

- 그런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후 IMF의 존재가치 및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음. 즉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련된 IMF의 위기조기 경보시스템의 문제점 여부 및 위기수습과정에서 IMF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의 국가들은 IMF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하였음<sup>21)</sup>
  
-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향후의 또 다른 금융위기의 대비를 위한 은행세의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각국의 의견이 분분하자, IMF는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G20 회의에 제출하였음
  - 즉 IMF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2010년 4월 22일에 제출한 「금융부문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비용 분담(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이라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바람직한 은행세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음
  - IMF가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바람직한 은행세의 도입방안은 크게 금융안정분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 FSC)과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금융안정분담금(FSC)이란 향후 정부가 금융기관에 지원해야 할 재정비용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 선호적 투자행태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분담금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22)</sup>

21) 황정욱, “국제사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 대책 및 과제 - 국제통화기금과 G20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자료, 1면.

22) 허인/양다영,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6. 24, 2면.

- 금융안정분담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총자산에서 기본자본과 부보예금을 제외한 비예금성 금융채무에 대해서만 부과함. 그렇지만 금융안정분담금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일률과세를 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음<sup>23)</sup>
  - 과세의 총규모는 GDP 대비 2-4%의 수준이 적정하고, 부과세율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에만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책정하고 그 이후에는 각 금융기관의 규모와 상호연관성 및 대체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각 금융기관의 위험도와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세분화 하여 조정함
  - 금융안정분담금은 주로 미래의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위기 후 투입 하였던 공적자금과 같은 구제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도 한 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금융활동세(FAT)란 IMF가 금융안정분담금 외의 추가방안으로서 제안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익과 보수를 합한 금액에 과세하는 방안으로서 모든 보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IMF는 금융안정분담금(FSC)과 금융활동세(FAT) 외의 또 다른 방안으로서 논의되던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의 도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금융거래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변수인 거래량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오는 자산규모나 상호연관성 등과 관련이

23) 박태준, "IMF의 은행세 도입에 관한 두 가지 방안 제안", 「자본시장 Weekly」제 16호, 자본시장연구원, 2010. 4, 1면.

### III.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금부담이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IMF가 바람직한 은행세의 도입 방안으로서 제안한 금융안정분담(FSC)과 금융활동세(FAT)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하려고 하였던 대차대조표 연계 은행세(Balanced Sheet Tax)와 IMF가 선호하였던 초과이익세(Excess Profit Tax)를 주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임

## 2. G20 회의

-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로 확산되자 국제사회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재점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G20 회의가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급부상하였음
- 원래 G20 회의는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 후 신흥시장국들이 세계경제의 논의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1999년에 개최된 IMF와 세계은행의 연차총회시 개최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에서 미국의 주도로 G-7과 주요 신흥시장국가들이 참여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를 정례화 하면서 시작되었음
- G20 회의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들이 함께 모여 세계경제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 세계경제의 주요현안이나 특정지역의 경제위기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회원국은 G7(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과 EU 의장국 및 신흥시장 12개국(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

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임. 그리고 G20 회의에는 IMF와 IBRD 및 ECB(유럽중앙은행)도 참석함

- 이러한 G20 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위기극복을 위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2008년 11월에 처음으로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후 2009년 4월에 제2차 런던회의와 2009년 9월의 제3차 피츠버그회의가 개최되었음. 참고로 현재 G20은 세계 GNP의 90%와 세계교역의 80% 및 세계인구의 2/3를 점하고 있음

- 2010년 1월 14일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은행세의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IMF가 바람직한 은행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은행세의 도입 여부에 관한 문제는 G20 회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

- 먼저 2010년 6월 4일 부산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은 은행세의 도입을 비롯한 금융권의 비용분담방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되, 은행세의 구체적인 부과원칙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즉 금융위기의 극복과 정리재원의 조달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의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였음
  - 그리고 향후 G20 회의에서 납세자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협감소, 경기상황과 무관한 안정적인 신용공급, 각국의 경제여건과 그에 따른 정책선택에 배한 배려, 공정한 경쟁기반의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원칙 개발에 합의하였음

### Ⅲ.

- 그런데 G20 회의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공동합의가 아니고, 각 국가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기에 관련된 금융권의 비용분담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도의 합의임
- 다음으로 201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당시 의장국이었던 캐나다가 은행세의 도입에 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 캐나다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발표로 촉발된 은행세의 도입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은행세의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의 실패를 보증하는 기능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그리고 은행세는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예대율(대출/예금)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담이 크게 되는데, 예대율이 낮은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예대율이 60-80%에 달하였기 때문임
  -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은행의 세금부담이 지금도 크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전체세입 중 은행이 내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후반인데, 이는 평균 1%대에 있는 다른 G7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G20 회의에서도 은행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견이 분분하여 향후 국제적인 공조차원의 은행세 도입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연혁적으로 2009년 11월에 개최된 G20 회의에서 영국의 브라운 총리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2010년 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도입계획을 발표한 은행세에 대하여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데 반하여 캐나다·호주·중국·일본의 경우에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임

- 이처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은행세의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진 이들 정부의 재정지원규모가 매우 크고,<sup>24)</sup> 또한 공적자금의 투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증가와 낮은 회수율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판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임
- 한편 2010년 4월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규모는 약 6,983억 달러인데, 이 중 31%인 2,159억 달러만이 상환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미상환액 중 거의 대부분을 미국·영국·독일이 차지하고 있음. 참고로 이들 나라의 미상환액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2,600억 달러, 영국이 940억 달러, 독일이 650억 달러임<sup>25)</sup>

### 3. 각국의 동향

#### (1) 미국

□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금융기관에 지원하였음. 그런데

24)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GDP의 3.6%, 영국의 경우에는 GDP의 5.4%, 독일의 경우에는 GDP의 4.8% 수준이었음.

25) 각국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투자액의 규모와 미상환액의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인/양다영, 전계 자료, 2면 참조.

### III.

그 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공적자금의 회수율마저 저조하자, 2010년 1월 14일 오바마 정부는 공적자금회수율의 제고를 위한 은행세의 도입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음

○ 즉 오바마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 달러 중 손실이 예상되는 약 1,170억 달러를 은행세를 통하여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은행세의 도입계획을 발표한 직접적인 이유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은행세는 미국 내 5대 투자은행을 비롯한 대형금융기관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수익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추구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도 구조개혁 없이 여전히 과거의 영업행태를 답습한 점에 대한 벌칙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오바마 정부의 은행세 도입계획은 공적자금의 회수율 제고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영업행태의 합리적 개선 및 미래의 금융위기를 대비한 재정자금의 적립 등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즉 오바마 정부의 은행세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비예금성부채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동안 횡횡하던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고정된 관념을 타파하고,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단기시장성부채를 통한 레버리지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동시에 추

### 구하는 정책임

-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은행세는 은행세의 징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충하며,<sup>26)</sup>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영업행태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하는 새로운 감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뜻도 아울러 담고 있음
  
- 이처럼 오바마 정부의 은행세 도입계획은 매우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은행세의 구체적인 부가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은행세의 부과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산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에 한정하되, 향후 10여년에 걸쳐 연 0.15%의 세율로 총 900억 내지 1,170억 달러 수준의 재원확보를 그 목표로 함
  - 그리고 은행세의 부과대상인 금융기관에는 은행과 증권회사는 물론이고 보험회사도 모두 포함시키며,<sup>27)</sup> 은행세의 징수를 통해 형성된 자금은 재정적자의 축소에 사용함
  
- 한편 최근에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합의한 금융안정화법안(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26)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은행세의 부과 및 징수의 주무부서로 국세청(IRS)을 상정하였음.

27) 은행세의 부과대상인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 중 상위 10개 금융기관의 부채규모는 약 7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부과대상 금융기관 전체를 추산하면 약 15조 8천억 달러임. 이처럼 상위 10대 금융기관의 부채규모가 전체 부채규모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 은행세가 도입되면 그 부담의 대부분은 역시 상위 10개 금융기관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큼(김자봉, “은행세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월간 금융』, 전국은행연합회, 2010. 7, 24면).

### Ⅲ.

의 경우에는 재상환플랜(Repayment Plan)의 방식으로 은행세의 도입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2) 영 국

-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한 정부의 자본투자액이 997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이고, 미상환액도 935억 달러로 역시 미국에 이어 2위이므로 은행세의 도입에 매우 적극적임
- 그리하여 영국 정부는 2010년 3월 24일에 은행세의 도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8개 원칙을 발표하였음. 즉 금융시장의 경쟁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수익은 해당 정부가 전부 사용하며, 은행세가 개별적인 금융기관과 주주 및 채권자를 위한 보험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시스템위험과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표명하였음
- 영국 정부의 경우 처음에는 은행세의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0년 6월 4일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도입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더욱이 2010년 6월 25일에 발표한 정부비상긴축안에는 은행세의 부과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음
- 즉 영국 정부는 2011년부터 국내 은행들의 총자산에서 기본자기자본과 예금을 제외한 부채에 대하여 은행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2011년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은행세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0.0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2년에는 이를 0.07%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연간 약 20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3) 독일

- 독일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자본투자액(647억 달러)과 미상환액(647억 달러)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세의 도입에 매우 적극적임. 그리하여 독일 정부는 2010년 3월 31일 은행들에게 은행세를 부과해 안정펀드(Stabilization Fund)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즉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은행을 그 대상으로 하여 은행세를 부과하되, 각 은행별 세액은 은행의 자산규모와 부채규모 및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등의 위험노출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할 예정임. 그리고 은행세의 도입으로 향후 약 12억 유로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임.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은행세의 부과징수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재정이 아닌 안정펀드에 귀속시키고, 이를 연방금융시장안정기관(FMSA)이 관할하도록 할 예정임
- 독일 정부의 구체적인 은행세부과안을 살펴보면, 먼저 총부채의 규모가 100억 유로 이하의 은행에 대해서는 0.02%, 100억 유로 초과 1,000억 유로 이하의 은행에 대해서는 0.03%, 1,000억 유로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0.04%의 세율을 적용하되, 이와 별도로 대차대조표상의 파생상품계정분류자산에 대해서는 0.00015%의 부가세를 적용할 계획임. 그렇지만 은행세 규모가 은행의 전년도 총수익의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8)</sup>

28) 한국금융연구원, “유럽 주요국들의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내용”, 「주간금융브리프」 제19권 28호, 2010. 7, 16-17면.

### III.

#### (4) 캐나다

- 캐나다는 미국·영국·독일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큰 위험을 겪지 않았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 바도 없음. 그리하여 캐나다는 이미 2010년 6월에 자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은행세의 도입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처럼 캐나다가 은행세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은행세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경영실패를 전보하는 방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오히려 금융기관이 과거처럼 과도한 위험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임. 또한 예대율이 낮은 미국 등과는 달리 캐나다의 경우에는 예대율이 60% 내지 80%에 달하기 때문에 비예금성 부채에만 부과되는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에는 현재에도 세금부담이 큰 은행들에게 더욱 가중된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그리하여 캐나다는 은행세의 도입에 반대하는 대신에 조건부 자본금제도(Contingent Capital Scheme)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은행세와 달리 기존의 자본금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하는 방안임

#### (5) 기 타

- 유럽연합(EU) : 2010년 6월 8일에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주요 회원국들

의 반대와 은행세의 재원운용 등에 관한 회원국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하였던 은행세의 도입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 스웨덴 : 스웨덴은 향후의 금융위기에 대비한 필요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4월에 은행세의 도입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0월에는 안정수수료(Stability Fee Bill)의 부과방안도 마련하였음. 구체적으로 은행을 비롯한 기타의 신용창출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부채에서 자본금과 일부의 후순위채 그리고 정부보증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0.036%의 은행세율을 부과하되, 초기 2년간은 그 세율을 0.018%로 낮추어 적용함. 그리고 이렇게 은행세를 통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안정기금(Stability Fund)을 조성하여 운용하는데, 향후 그 규모가 GDP의 2.5% 수준에 달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임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2010년 1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제금융자금을 보전하고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은행세의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11년이나 2012년부터 실시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은행의 총자산에 대하여 0.07%의 세율로 은행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유로 정도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헝가리 :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던 헝가리는 2010년 4월 재정적자를 2010년에는 GDP의 3.8%까지 감축하고 2011년에는 이를 다시 3%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며 IMF와 EU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음. 그런데 IMF와 EU가 헝가리 정부의 재정적자감축계획안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원을 거부하자, 2010년 4월 헝가리 의

### III.

회가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한 은행세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헝가리 정부가 IMF와 E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구체적으로 500억 포린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국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0.5% 수준의 은행세를 부과하여 향후 약 2,000억 포린트(약 8억 4천만 달러) 정도를 조성할 계획임. 그런데 이러한 수준은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추진 중인 다른 EU 국가의 은행세 수준이 0.1-0.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배 정도에 달하는 매우 강화된 기준임. 따라서 은행세가 계획대로 부과될 경우에는 현지의 은행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금융협회 : IMF가 바람직한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G20 회의에 제출한 후 각국의 금융업계는 만약 은행세가 도입되면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즉 영국의 은행연합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는 정부가 은행세를 통하여 장래의 은행파산을 대비한 보험성 세금을 확보해 둔다면, 그로 인해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음. 또한 EU의 금융시장협회(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 in Europe)는 IMF의 은행세 도입에 관한 방안은 정부의 재정수입만 확대시킬 뿐 금융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금융업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sup>29)</sup>

---

29) 박태준, 전계 자료, 2면.



## 1. 은행세의 의의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환수하며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 도입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은행세(Bank Levy)는 주로 은행의 자산 중에서도 특히 안전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함
  - 그런데 이러한 은행세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10년 1월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써 은행세의 도입계획을 발표한 때부터 이므로 일명 “오바마세”라고도 함
  - 또한 은행세는 금융위기를 야기한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기의 책임비용”이라고도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자금이 라는 뜻에서 안정화수수료(Stability Fee)라고도 하며, 금융기관의 잘못된 영업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벌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징벌세”라고도 함
- 그런데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행세의 용어를 살펴보면, 은행세의 도입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미국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가는 “Bank Lev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Bank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금융위기 책임 수수료(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정의 및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혼란

## 을 주고 있음

일반적으로 Tax는 세금이라는 뜻이고, Levy는 그 중에서도 부담금의 성격이 강한 것을 의미함. 즉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고려된 것이므로 별 칙성 세금 또는 부담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Bank Lev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임. 이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은행세의 도입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그런데 문제는 은행세의 또 다른 도입이유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필요한 재정을 미리 확충하고, 대마블사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금융기관들이 과거처럼 위험한 영업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있다는 점임.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세금 또는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아니함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거액의 재정지원을 하여 은행세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할 때 조세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은행세의 부과대상과 세율 및 은행세를 통해 조성할 자금의 규모 등에 있어서 각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독일은 은행세의 부과대상을 은행(투자은행 및 저축은행 포함)으로 한정하면서 안정기금의 방식을 선호하지만, 프랑스는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회사와 헷지펀드 및 보험회사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면서 조세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행세란 용어는 역시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은행세란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상이하여 공통된 분모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음
- 일반적으로 조세란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과세권에 근거하여 개개인의 소득이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되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의미하고,<sup>30)</sup> 부담금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의미함<sup>31)</sup>
  - 다만 조세와 부담금이 다른 것은 ①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충당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조세는 일반국민에게 균등

30) 조세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세가 갖는 경제적 효과에 착안하여 재정학적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에 의할 때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내국세와 관세, 직접세와 간접세, 인세와 물세, 보통세와 목적세, 소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종가세와 종량세, 비례세와 누진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8-11면). 이 중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의해 각각의 부과대상에 따른 세법이 별도로 존재하고(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만이 상속과 증여라는 2개의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함),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2010년 신설), 지방소비세(2010년 신설))와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음.

31) 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사업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기업자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부담금에 관련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강제집행의 방법은 조세의 경우와 같으며, 불복에 대한 쟁송 역시 행정쟁송에 의함. 그런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특정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전을 부담금이라고 할 때도 있음. 참고로 부담금의 유형으로는 수익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도로부담금, 하천부담금, 도시계획부담금, 사방부담금 등이 있음.

#### IV.

하게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점, ③ 조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표준으로 부과하지만 부담금은 사업소요경비와 부담자의 재력 및 사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점임

- 한편 각국이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금융기관에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및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 금융기관의 고위험적인 영업행태의 제한, 국가의 재정적자 전보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러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는 더욱 찾기 어려움.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 그 자체가 아직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은행세는 세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담금이나 수수료 또는 요금 등 준조세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 생각전대 국제적으로는 은행세란 용어가 이미 주지되어 있으므로 일단 그대로 사용하되, 국내적으로는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각국의 주된 이유 또는 필요성에 합당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결국 은행세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만 남게 되는데, 은행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종합하면 은행세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은행 중에서도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을 주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음. 그리고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역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또는 미래의 금융위기를 대비한 재원의 확충에 있음. 그렇다면 은행세는 각국의 정부가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sup>32)</sup>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 은행세의 도입목적

- 현재 IMF와 G20 회의 및 각국의 정부가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 은행세는 조세의 방식으로 도입하든 부담금 또는 수수료의 방식으로 도입하든 모두 금융산업에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그 도입목적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의 도입목적은 종합하면, 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② 향후의 금융위기에 대비한 재원 마련, ③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④ 금융회사의 지나친 영업행태의 규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는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그 회수율은 매우 저조함.<sup>33)</sup>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희생하거나 위기

32) 부담금은 임의부담금과 강제부담금이 있는데, 광의의 부담금에는 임의부담금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부담금 즉 강제부담금만을 의미함.

33)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투자한 자본액과 회수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십억 달러)

국 가	자본투자요청	자본투자액	보류중인자금	상환자금	미상환액
미국	480.6	451.2	29.4	187.2	260.0
영국	125.2	99.7	25.5	6.2	93.5
독일	72.5	64.7	7.8	0.0	64.7
프랑스	28.3	21.5	6.8	15.7	5.8
네덜란드	22.1	22.1	0.0	6.8	15.3
벨기에	16.6	16.6	0.0	0.0	16.6

IV.

를 벗어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그를 통한 도덕적 해이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 은행세의 도입은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었고, 금융산업은 그 특성상 항상 위기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기는 일단 한번 발생하면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하게 됨.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를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필요자금을 확보해 둔다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분야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결국 재정이 고갈되고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음. 그리하여 각국의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전보 또는 확충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은행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세의 주된 부과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임.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주된 원인제공자는 금융기관이지만, 이 외에도 금융에 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정부의 정책 실패 및 위기대응시스템의 부재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국 가	자본투자요청	자본투자액	보류중인자금	상환자금	미상환액
아일랜드	9.5	9.5	0.0	0.0	9.5
스위스	5.7	5.7	0.0	0.0	5.7
룩셈부르크	3.9	3.9	0.0	0.0	3.9
중국	2.3	2.3	0.0	0.0	2.3
대한민국	1.5	0.0	1.5	0.0	0.0
바레인	1.0	1.0	0.0	0.0	1.0
덴마크	0.7	0.0	0.7	0.0	0.0

[출처] : 김자봉, 전계 자료, 25면; 허인/양다영, 전계 자료, 2면.

적으로 내포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단순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은행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대마블사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안정적인 수익창출행위에만 몰두하다보니 주택담보대출 등에 많이 치중해 있었으며, 단기성과주의에 빠져 고위험성 영업행위를 반복해 왔으며, 위험의 분산을 위해 각종 새로운 신용파생상품을 양산해 왔음.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부적절한 영업행태는 분명히 일정한 규제를 받아야 함.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이러한 부적절한 영업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의 개선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장치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임

- 한편 만약 은행세가 도입된다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결국 금융기관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은행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이유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이나 이유의 타당성과 합리성도 아울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각국의 정부가 은행세를 도입하려는 가장 주된 목적은 역시 위기극복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대비한 재원의 확보임.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IV.

- 먼저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도입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주된 주체는 분명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모든 금융기관이 아니라 특정한 일부의 금융기관임. 따라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그 투입자금의 회수를 위해 은행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분명 타당성과 합리성을 부여받을 수 있음. 그렇지만 만약 공적자금을 전혀 지원받지 아니한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은행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결코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음. 따라서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목적을 위한 은행세는 그 부과범위를 좀 더 축소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미래의 금융위기를 대비한 재원의 확보라는 도입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는 이미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었고, 또한 금융산업은 그 구조적 특성상 항상 금융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기는 일단 한번 발생하면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많은 재정적 투자를 요하게 됨.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한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충분히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위기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금융기관이나 모두 안고 있기 때문임
- 그런데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은행세의 도입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2010년 6월 4일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와 동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① 납세자의 보호, ②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위험) 축소, ③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신용흐름의 보호, ④ 개별국가의 상황이나 정책의 고려, ⑤ 공정경쟁촉진에의 기여 등의 5가지 원칙을 천명하였음

- 한편 은행세의 도입목적 및 그 합리성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바로 은행의 자본금제도임.<sup>34)</sup> 비록 은행의 자본금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동안 은행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바젤 III에 대한 논의처럼 은행의 시스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자본제도의 개선방안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굳이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의 합리성이 더욱 필요한 것임

□ 사실상 은행세의 주된 부과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자신의 금융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금융기관은 그 구조적 특성상 국제적인 상호연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은행세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도 아울러 있어야 함

-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신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각종 시스템 위험을 그들에게 전가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34) 만약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났던 증권화를 활용한 자본금재정거래의 문제점이 적절히 해소되거나 또는 캐나다 정부가 주장하는 조건부자본금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시스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면 굳이 은행세를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김자봉, 전제자료, 26-27면).

IV.

사회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위험전가는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세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은행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위험전가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임

-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그 기능과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상호연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각국이 은행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러한 연계관계를 고려한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만약 각국이 자국에만 적합한 은행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가만을 찾아다님으로써 결국 국제금융자본이 한꺼번에 대이동하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그런데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등의 논의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도 은행세의 도입 그 자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당분간은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국제공조체제의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한편 은행세의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과연 은행세의 도입이 국가간의 금융시스템의 차이에도 상관없이 시스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점임. 오늘날의 각국의 금융시스템을 유형화 해 보면, 크게 시장중심금융시스템(market-based financial system)과 은행중심금융시스템(bank-based financial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는 은행세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과 영국이 취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과 중개기능에 치우쳐 있어 자연스럽게 단기자금시장이 발전해 있고, 그

로 인해 비예금성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비해 후자는 은행세의 도입에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캐나다 등이 취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주로 예대업무에 관련된 증개기능을 중시하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예금성부채의 조달에 관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음.<sup>35)</sup> 이처럼 양 시스템은 근본적인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은행세의 도입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3. 은행세의 도입방식

- 은행세의 도입논의에 있어서 도입목적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사항은 바로 은행세의 구체적인 도입방식에 관한 문제임. 어떠한 방식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의 방향과 재정확충의 범위, 납세자의 저항 정도, 은행세 부과와 공평성 여부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임
- 바람직한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IMF의 제안과 G20 재무장관 회의 및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내용 그리고 이미 발표된 각국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은행세의 도입 방식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조세의 방식과 부담금의 방식 그리고 수수료의 방식 등 3가지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이 중 어느 한 방식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설정된 다양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의 방식을 병행하거나 또는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35) 김자봉, 전계 자료, 27면.

IV.

- 참고로 은행세의 도입을 주창한 미국의 경우에는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50개의 대형 금융기관(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총자산에서 기본자본과 부보예금을 뺀 금액에 0.15%의 세율을 곱한 은행세(Bank Levy)를 부과하여 금융위기를 지원한 구제금융에 관련된 손실을 보전하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위기를 야기한 대형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조세의 방식과 부담금의 방식 그리고 수수료의 방식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각국의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은행세를 도입하든지간에 특정한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은행세의 도입목적과 연계되어야만 비로소 그 합리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임. 그러므로 은행세의 도입에 있어서는 먼저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에 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서 은행세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은행세의 도입목적 및 그에 연계될 수 있는 바람직한 도입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은행세의 도입목적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투입하였던 공적자금의 회수에 있다면 부담금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므로<sup>36)</sup> 부과대상의 일반성이 요구되는데, 공적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은행세는 이러한 일반성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임

- 그리고 금융위기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조세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조세의 특성인 일반성에 의해 그 부과대상을 금융기관의 전체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임. 참고로 IMF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금융권의 금융위기비용분담에 관한 방안의 도입에는 공감하였지만, 은행세의 주된 도입목적은 구제금융의 환수 및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라는 두 가지 성격에 들 경우에는 세금의 형태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음<sup>37)</sup>
- 한편 수수료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기관의 일정한 거래 또는 활동을 그 전제로 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것인데, 동일한 금융거래 또는 활동에 대하여 특정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역시 합리성을 부여받기 어렵고, 또한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특정한 금융기관이 그러한 부담을 자신들의 거래상대방인 국민일반에게

36) 임승순, 전제서, 4면.

37) 세계적인 투자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도 이런 측면을 지적하며 은행세의 도입을 반대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미 구제금융자금을 상환한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는 은행세를 부과하면서도 1,100억 달러를 지원 받고 국유화된 모기지 금융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임. 즉 은행세의 도입목적이 단순히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추궁과 정부에서 지원해 준 구제금융의 상환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미 구제자금을 상환한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는 은행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임.

IV.

전가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목적에서의 수수료의 방식은 역시 적합하지 않음

○ 다음으로 은행세의 도입목적이 미래의 또 다른 금융위기에 대비한 필요재원의 확보에 있다면 조세의 방식이나 수수료의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이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은 있음

- 먼저 조세의 방식은 일반성의 특성상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일정한 세율의 은행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될 것임. 따라서 조세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됨. 즉 은행만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등도 모두 포함할 것인지 등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은행세를 영구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도 아울러 결정해야 함
- 다음으로 은행세를 수수료의 방식으로 거둘 경우에는 우선 수수료의 개념정의 그 자체와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됨.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수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인데,<sup>38)</sup> 미래의 금융위기를 대비한 은행세의 징수에서는 국가 등이 납세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제공하는 공적 사무가 없기 때문임. 그리하여 결국 수수료의 방식에서는 보험 수수료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조세와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요율의 결정 등 매우 복잡한 실무적인 문제가 제기됨

38) 엄격히 말하면 공물(公物)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 하고, 인적(人的)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고 할 수 있지만, 공기업의 이용과 같이 인적 사무와 물적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경우에는 반대급부 자체를 수수료라고도 함.

- 다만 이처럼 미래의 금융위기를 대비하여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세의 방식에 의하든 수수료의 방식에 의하든 각 금융기관의 일괄적인 각출이 바람직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임
- 한편 은행세의 도입목적이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대형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고위험성 영업행태의 개선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있다면 조세의 방식과 부담금의 방식 및 수수료의 방식 그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아니함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금융기관들의 관행적으로 해 온 고위험성 영업행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향후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은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은행세를 부과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인식한 것이고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임
  - 은행세의 도입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도 이미 대형은행을 규제한다는 성격의 은행세를 세금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규제 성격이 있는 은행세를 세금형태로 도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재정을 형성하는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그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의 개선과 그러한 영업행위를 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는 은행세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위한 특별규제규범에 의해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4. 은행세의 부과기준

- 그동안 은행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각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세의 부과대상과 부과규모 그리고 부과방법 등이 조금씩 상이함을 알 수 있음. 즉 은행세를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만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부과할 것인지, 은행세의 부과대상을 예금성부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예금성부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서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그동안 논의된 은행세의 부과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모두 부과범위에 포함시키되 일정한 규모의 제한을 두는 경우와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은행을 부과범위로 하는 경우 및 시스템 위험에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들을 부과범위로 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은행세의 도입을 처음으로 발표한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과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를 모두 부과범위에 포함시키되 자산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50개의 대형 금융기관만으로 한정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제외하면서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등 모든 은행을 부과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시스템 위험에 관계된 모든 금융기관을 부과범위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헷지펀드까지 은행세의 부과범위로 상정하고 있음<sup>39)</sup>
  - 그런데 은행세의 부과범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은행세의 도입목적과 연계하여 결정해야만 그 합리성을 부여받을 수 있음. 즉 은행세의

39) 김자봉, 전계 자료, 26면.



도입목적이 금융위기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있다면 당연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만이 부과범위이어야 할 것이고, 은행세의 도입목적이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한 필요재원의 확보에 있다면 그러한 금융위기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부과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물론 이처럼 은행세의 부과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도입목적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각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정도 그리고 은행세의 금융소비자로의 전가의 가능성 및 금융시스템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은행세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국은 주로 비예금성부채를 은행세의 주된 부과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비예금성부채를 은행세의 부과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각국의 금융시스템과 예대율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현재 미국과 IMF가 제안하고 있는 형태의 은행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예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금융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예대율이 높을수록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게 되므로 결국 금융기관은 예금 이외의 부채를 통해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예대율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세가 도입되면 시티은행은 연간 약 22억 달러 그리고 BOA(Bank of America)는 약 15억 달러 정도의 세금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예대율이 60-80%에 달하여 은행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캐나다의 경우와 예대율이 캐나다의 약 2배 이상인 이탈리아·호주·스페인 등의 경우에는 은행세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세금부담이 얼마나 증가될 지 상상하기 어려움

## 1.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정부의 입장

- 현재 정부는 은행세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음
  - 먼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하였다는 서울경제의 기사에 대한 2010년 4월 13일자 보도자료에서 은행세의 국내에의 도입 여부는 국제적인 논의의 동향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은행세의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는 향후의 계획을 밝혔음
  -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는 은행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준 및 요율 등의 결정만 남았다는 국민일보의 기사에 대한 2010년 6월 18일자 보도해명자료에서는 은행세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도입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 한편 2010년 6월 1일 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은 한국은행이 주최한 「2010 국제컨퍼런스」에서 은행세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같은 날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은 외화차입금으로 과도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은행들도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은행세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 그리고 G20 재무장관회의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참가한 윤증현 장관은 출국기자간담회에서 은행세의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제금융환경이 좋을 때는 외자가 많이 들어

오고 나쁠 때는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번 논의는 이런 부작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금융거래세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음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는 은행세의 도입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금융권의 분담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은행세의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산업에 관한 정책결정의 핵심인 한국은행과 금융실무계에서는 은행세의 도입 여부와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에 관한 논의가 분분함

- 먼저 한국은행은 「은행부과금(은행세)에 대한 국별 의견 대립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세 제도가 국제공조에 실패하고 각국의 금융산업 상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정착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히며, 은행세의 도입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론적인 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은행세 제도를 국제공조에 의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규제 차익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속성상 은행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영업기반 전체를 규제가 없는 국가로 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그리고 은행세의 부담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세가 부채의 구성을 적절히 조절해 합리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한다면 부담 자체가 크지 않아 소비자 전가라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

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음으로 금융실무계에서는 은행세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은행세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이는 KB금융·우리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 등 우리나라의 4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은행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며 은행세의 도입에 관한 재고를 요청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음

## 2. 은행세의 도입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은행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은행세의 도입목적임
  - 즉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목적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있는지 또는 미래에 발생가능한 금융위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있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영업행태의 개선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에 있는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그런데 만약 은행세의 도입목적이 금융위기에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왜냐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제도를 근거로 금융기관들이 이미 은행세를 내고 있

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임<sup>40)</sup>

-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상환과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임. 즉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상환은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공적자금의 수혜자인 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을 스스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하지만, 은행세는 이러한 취지와 더불어 대형은행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국내의 공적자금상환제도는 은행의 예금성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은행세는 비예금성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동기를 갖게 되는 점도 상이함. 구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상환제도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예금성부채의 비중을 늘리려 할 것이고, 은행세 하에서는 반대로 예금성 부채의 비중을 더 늘리려 할 것이기 때문임
- 다음으로 정부가 은행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해야 사항은 바로 은행세의 구체적인 부과범위와 부과대상에 관한 문제임
- 먼저 은행세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은행세의 도입목적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음

40) 법정부담금제도에 의할 때 부보금융기관들은 향후 25년에 걸쳐 예금잔액의 0.1%에 해당하는 요율로 약 20조원의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특별기여금제도는 사후적인 손실보전방법인데, 이 점에서 동 제도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분담금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김자봉, 상계 자료, 30면).

- 즉 은행세의 도입목적이 공적자금의 회수에 있다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만을 그 전제로 하되,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법정분담금제도와와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 은행세의 도입목적인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한 필요재원의 확보에 있다면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을 모두 부과범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임. 다만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됨<sup>41)</sup>
  - 한편 은행세의 부과범위와 관련하여 좀 더 세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보험회사의 경우임.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은행과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크지 않고, 또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CDS와 같은 파생상품을 취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임.<sup>42)</sup> 따라서 정부가 지금처럼 금융기관의 겸업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연구검토도 필요할 것임
  -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미국의 AIG처럼 보험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세의 부과범위에 포함시키되,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필요할 것임
- 다음으로 은행세의 부과대상을 국제여론과 같이 비예금성부채로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깊이 검토해야 함

41) 허인/양다영, 전계 자료, 1면, 5면.

42) 변혜원, “보험회사에 대한 은행세 부과 여부 검토”,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0. 6. 7, 12면.

V.

- 왜냐하면 미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비예금성부채를 전제로 한 은행세는 예대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참고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평균 예대율은 114%에 달하는데, 여기에 외화 대출과 예금을 포함하면 약 123%에 달함<sup>43)</sup>
-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은행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예금성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자연스럽게 비예금성부채의 일부인 본점차입금 및 외화차입금의 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외은지점의 본점차입과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이 감소하여 결국 우리나라의 단기자본 유출입 현상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sup>44)</sup>

□ 정부가 은행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산업이나 금융시장에 관한 정부의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여부 및 은행세의 도입에 관련된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구축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있어서 이른바 Mega Bank의 추세에 있음. 즉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써 2009년 2월부터는 통합된 자본시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은행세의 도입과 상치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계 자료, 4면.

44) 서병호,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주간 금융브리프』 제19권 19호, 한국금융연구원, 2010. 5, 12면.

-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가장 큰 금융시장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정부가 Mega Bank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임. 즉 은행세의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이미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금융시장인 미국이 은행세의 도입을 통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주요정책 중의 하나는 바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대형금융기관과 체계적인 연구검증 없이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쏟아지는 각종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방향은 은행세의 도입논의에 관련된 국제회의와 각국의 정부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대형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선 1997년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의 가장 주된 요인이 은행들의 무분별한 해외단기차입금의 사용을 막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부분적으로 은행들의 무분별한 단기의 화차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은행세의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즉 은행세를 도입하게 되면 단기성외화차입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위험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그리하여 국제적인 금융환경이 좋을 때에는 기대 이상으로 외자가 많이 들어오지만, 국제금융환경이 나쁠 때에는 한꺼번에 급속히 외자가 빠져나감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외자의 도입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은 편임



V.

○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하에서 정부가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구축 없이 단독으로 은행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자금을 투자한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국가를 찾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국제금융자본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을 빠져나감으로써 결국 또 다른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가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은행세의 도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기존의 자본금제도와와의 상호관계임. 즉 은행세를 자본금제도의 보완수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함

○ 은행의 자본금제도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왔음. 그리하여 자본금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젤 II와 바젤 III로 대변되는 신BIS협약임<sup>45)</sup>

---

45)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 협력과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제결제은행의 산하위원회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또는 바젤위원회라고 하는데, 동 위원회는 선진 10개국(G10)의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의해 1975년에 설치되었고, 현재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G10국 외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스페인을 포함하여 모두 13개국의 중앙은행대표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동 위원회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BIS자기자본규제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BIS규제 또는 바젤 I 이라고도 부르고, 그 이후에 성안되었으며 BIS자기자본규제제도보다 은행의 자율권을 더 많이 보장한 신BIS자기자본규제제도를 바젤II라고 부르고 있음.

-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은행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금융 위기시 나타난 증권화를 활용한 자본금재정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고 또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고위험성 영업행태의 규제에 있다면 굳이 복잡한 논의를 거쳐 은행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본제도의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 (2010.8.25 )

- 최근(2010년 8월 26일) 국내 언론 등에, 독일에서 은행세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님.
  - 우선 명칭이 은행세법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KredReorgG-E)」(약칭) 법안이 상정된 것이며, 다음으로 그 법안은 통과된 것이 아니고 상정된 것에 불과함.
  - 그 법안 중에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금융시장안정청(FMSA)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은행세와 관련있는 부분임.
  
- 이 글은 은행세 도입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최신 동향 소개라는 차원에서 이하 독일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KredReorgG-E)」이라 약칭할 법안에 대한 소개 내용을 정리·요약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KredReorgG-E)」법안의 정식 명칭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평온한 청산, 금융기관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및 주식법상의 기관책임에 대한 시효의 연장에 관한 법률안(구조조정법)」<sup>46)</sup>임.

---

46)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strukturierung und geordneten Abwicklung von Kreditinstituten, zur Errichtung eines Restrukturierungsfonds für Kreditinstitute und zur Verlängerung der Verjährungsfrist der aktienrechtlichen Organhaftung(Restrukturierungsgesetz)

## 1. 문제 및 목표

- 최근 금융위기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평온한(geordnet) 절차에 따라 위기에 처한 은행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 기존의 도산법에 의한 수단에 의하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음.
  -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의 도산에서 보듯이, 거대은행이 아닐 지라도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이, 도산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파급효과를 지님.
  - 또한 기존의 도산극복과 관련한 은행감독법상의 수단들은, 은행의 주요한(systemrelevant)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음. 왜냐하면 그 조치들은 영업을 동결하고 다른 금융시장 참여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도산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
  
- 정부가 안정화조치를 취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조치는 주요 은행의 구조조정 또는 평온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의 위기극복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
  - 아울러 당사자들의 기업가적인 책임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음. 효율적으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및 제도적인 토대를 갖추어 그와 같이 효과가 왜곡되는 것을 가능한 한 약화시켜야 할 것임.
  -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요 은행의 경영부실 상태(Schiefelage)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

이 이러한 도산극복 비용을 가능한 한 스스로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왕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은행을 구조조정하고 평온한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막대한 금융비용이 요구됨. 이러한 비용들은 과거와 같이 공적 자금을 의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금융권에서 조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대다수 경영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은 것이 금융시장 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다양한 종류의 이사 보수는 위험이 큰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음. 향후의 투자 실패에 대한 인적 책임은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걱정하지 않았음.
- 독일의 주식회사 기관의 책임규정은 얼핏 보면 매우 엄격함.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의무를 위반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분쟁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스스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이사 책임은 경과실로도 성립하게 됨. 그러나 경영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는 많지 않음.
- 이러한 현실은 법적인 제도개선 및 참여자들, 특히 각 회사 감사위원회가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점차 바꿀 수 있을 것임. 납세자들은 금융위기 상황을 해결하느라 많은 금융비용들을 부담하였음.

□ 따라서 금융시장의 위기는 신중하고 평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멸시효가 단기에 소멸하는 등의 이유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됨.

## 2. 법안 내용

### (1) 금융기관에 대한 2단계(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절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KredReorgG-E)」은 재무구조 개선절차 및 구조조정절차와 함께 대화를 통한 집단적 해결방안을 위한 효율적 근간을 형성하는 2단계의 절차를 규정함. 이러한 절차는 금융기관 스스로의 신청에 따라 시작하며 이는 자기 책임에 의한 위기극복을 위한 것임.
- 1단계는 재무구조 개선절차로서 도산 이전 단계에 업무집행 영역에 대하여 조기에 단호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부실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재무구조 개선절차는 매우 다양한 대처방안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방안들은 대부분 이미 신용제도법(Kreditwesengesetz)이 규정하고 있음. 제3자의 권리에 대한 개입(침해)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제2단계인 구조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산 절차에 따르지만 일부 다른 특징도 포함.
  - 구조조정 절차는 권리보호의 제한(축소)과 같은 절차의 촉진을 위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개입(침해)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못하도록 주주들도 (이러한 절차에) 편입시킬 수 있음. 그 밖에 이러한 절차는 도산절차와는 전체 채권이 축소되는 다중소송절차(Massenverfahren)가 아니라 주채권자를 (절차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임.

- 두 절차단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각각 법원이 선임하는 전문가 (Berater;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전문가)인 신용제도법의 특별 수임자(Sonderbeauftragte) 및 임시 도산관재인 형태가 그 기준이 됨. 그 전문가는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할 책임을 지며 위법행위(Fehlverhalten)에 대한 책임을 짐.
  - 재무구조 개선을 요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재무구조 개선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구조조정 절차는 법상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권리)에 대한 침해가 가능함. 그 때문에 오로지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특히 중대한 위기가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 따라서 제2단계는 신용제도법안 제48b조 제2항이 의미하는 주요위험사항(Systemgefährdung)인 존속위험(Bestandsgefährdung) (동법안 제48조 제1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금융기관에 적용될 수 있음.
  
- 재무구조 개선절차 및 구조조정 절차에서는 사안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수단들이 있음.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KredReorgG-E)」안에 따른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 연방청은 즉시 제2항에 따른 감독법상의 개입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특히 신용제도법에 따른 조치들을 포함하는 기타의 은행감독법상의 조치들도, 전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병행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KredReorgG-E)」안은 이미 이전의 도산에 선행한 단계에서 개입하는 특별한 도산의 절차를 창설함. 절차 진행 중에 도산사유가 발생하면 신용제도법 제46b조에 따른 신청권이 집중된 연방청은 언제든지 도산신청을 할 수 있음.

## (2) 조기개입 및 위기극복을 위한 감독법상의 수단

- 감독법상의 수단들은, 제1단계에서 위기에방대책을 강화하고 도산 전에 금융기관이 자기책임 하에 조기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의 조속한 재무구조개선조치를 지원하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금융 감독에 대한 추가적인 권한도 규정하고 있음. 연방금융감독청은 특별수임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요구되는 적절한 업무를 수임인에 이전할 수 있음.
- 제2단계에서는 위기에 처한 은행의 구조조정 및 평온한 청산을 위하여, 현행의 권력(행정)적 대처수단들이 확대됨. 이를 통하여 은행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금융감독청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음.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청은 긴박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 이는 금융기관의 존속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재산 또는 지급수단(금전)을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요구될 것임.
- 따라서 본 법안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주요 은행의 재



산 또는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私)은행 또는 일시적으로 국가의 가교은행(Brückenbank)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요 영업부문을 다른 법인(가교은행)으로 이전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은 구 금융기관에 잔존하는 중요하지 않은 부문은 경우에 따라 원래의 도산절차에 의해 청산될 수 있는 반면에 새 은행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조치들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음.

- 이와 유사한 행정적 조치들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고 유럽위원회  
회의 현재 계획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럽체제(EU-Rahmenwerk)  
의 본질적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동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  
(행정)적 구조조정권한은 이러한 기본 틀에도 부합함.
- 도산개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법률안은 금융감독청을  
일방당사자로 도산관재인과 도산법원을 타방당사자로 하여 양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음.

### **(3) 은행세와 금융기관 구조조정기금 설치**

- 연방의 특별재산으로서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되며 이 기금은 금  
융시장안정청(FMSA)가 관리함. 이 기금은 주요 은행의 장래의  
구조조정 및 청산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그 목적으로 함.
  - 모든 금융기관은 이 기금에 출연할 의무를 부담함. 출연금액  
은 금융체계의 도산위험을 기준으로 하게 됨. 금융체계의 도  
산위험은 금융기관의 크기, 금융시장에서의 해당 기관의 연계  
수준, 특히 채무를 기초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표들  
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 그리하여 은행세는 금융기관의 현  
실에 맞는 기업경영을 하도록 기여할 수 있음(조절기능).

#### (4) 연방금융시장안정청의 업무

- 연방금융시장안정청은 구조조정조치를 시행하고 구조조정기금의 관리를 맡음. 연방금융시장안정청이 설치된 이후로는 이 기관이 현재 금융위기 하에서의 독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됨. 동기관은 이미 이러한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있어서 이미 검증이 되었으며 은행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주관할 능력을 갖게 됨.

#### (5) 주식법상 기관책임에 대한 시효 연장

- 입법안은 상장회사 또는 신용제도법 제1항 제1문에서 의미하는 금융기관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상 의무위반에 대한 주식법상의 책임(주식법 제93조)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효 연장에 따라 기관의 의무위반이 나중에야 드러나거나 사실상 회사 기관의 인적 구성이 변경된 후에 기관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6) 금융시장안정기금법 및 금융시장안정촉진법의 개정

- 금융시장안정기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률안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새로운 권한들이 금융시장안정청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이에 더하여 금융시장안정기금은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현재의 청산기관(Abwicklungsanstalt)과 관련하여 특히 이미 개시된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

- 금융시장안정촉진법(FMStBG) 개정안은 금융시장안정기금이 이미 한 지분참여로부터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이를 통하여 이러한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이룬 후에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환원되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